

『구미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2년 10월 11일

나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2년 10월 11일

라. 상정일자 : 2022년 10월 19일

제2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환경교통국장 남병국

나. 제안이유

1회용품 폐기물 감량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
업소인 환경우수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1회용품 사용
저감사업 참여자에 대한 혜택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환경우수업소에 대한 정의 신설(안 제2조제4호)
- 환경우수업소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(안 제7조제3항)
- 1회용품 사용 저감 사업 활성화를 위한 참여자 혜택 제공 근거 마련
(안 제9조제3항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
-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없음
-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김 용 덕

- 본 「구미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은,
 -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인 환경우수업소에 관한 정의 및 지원, 1회용품 사용 저감 사업 참여자에 대한 혜택 제공 등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 - 1회용품 저감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업소 및 참여자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의 사용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